

주요국 에너지정책 一覽

〈美國〉

		석유위기 후~'85년	'86년 이후 현재까지
정책 목표	나슨 : 원유의 공급체계 확립, 省에너지, 대체에너지의 개발추진, SPR의 추진, 對산유국 정책의 재구축, 石油, 가스 가격체계의 조정	• 에너지의 가격 및 공급면에서의 안정성 • SPR, 국제적 제휴, 연구개발 등에 의한 에너지의 안전보장	
	포드 : 국내 원유, 가스가격통제의 단계적 철폐, 자동차燃比 향상요청, SPR제도 창설, 석탄·원자력중시 에너지공급의 확보	• 균형있는 에너지의 혼용 예) 省에너지, 석탄, 원자력을 3대 요소로 하고 있다.	
	카터 : 省에너지, 대체에너지의 개발추진, 신에너지의 개발추진, 수입의존율 축소, 과세에 의한 소비억제	•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	
	레이건 : 에너지에 관한 행정관리·규제의 최소화 (시장메커니즘의 중시), 대외적으로는 에너지의 안전보장에 관하여 각국이 응분의 조치를 부담할 것을 요청		
정책	나슨 : '78년 : 국가에너지절약법에 의한 주택 省에너지 서비스 • 휘발유 낭비車에 대한 과세 • 개인건물의 단열화 투자에 대한 과세공제, 보조금(省에너지법, 에너지세법) • 누진적 전기요금 체계, 계절별 요금제(공익사업규제 정책법) • 공업부문에서는, 주요업종별 에너지 절약목표 설정	• 시장메커니즘의 중시 • 省에너지 연구·개발 프로그램 지원 • 에너지자원의 효율적, 경제적사용 촉진 • '87년 全美 省에너지법 개정 : 전기제품의 최저효율 기준 설정 • '88년 신설 빌딩에 대한 省에너지 기준 및 지침 규정 • '89년 신규차량 연비효율 기준의 상향조정	
	포드 : 가격통제 : ①'71년 이후 국산原油의 가격을 낮게 억제 ②카터정권은 가격통제 철폐를 추진 ③'81년 레이건이 완전 철폐 • 전략비축의 강화 • 취약성의 최소화 • '80년 : 초파이운세의 도입(가격통제에 대신하여 등장)	• SPR의 장기목표('90년) 7.5억배럴 • 알리aska 원유의 수출 해금 • 육상 및 대륙붕 유전의 해방 • 확인매장 석유의 자산소유권 양도규제의 철폐, 코스트 減耗공제에서 비율감모 공제로 전환 등을 에너지부가 대통령에게 제언 • 石油탐사, 개발 축진을 위한 세제우대(천연가스에 대해서도 동일)	

		석유위기 후~'85년	'86년 이후 현재까지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87년 : 대형산업보일러, 발전용에 石油가스의 사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는 연료사용법의 개정
석 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石油, 천연가스에서 석탄으로의 연료전환 촉진조치 예) 전환을 위한 저출에 대하여 10% 세공제 • 신규보일러의 경우, 천연가스 사용의 원칙적 금지(석탄전환법) • 이미 설치한 설비의 '90년 이후 발전용 가스 사용금지(석탄전환법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석탄이용개정 촉진대상(연료사용법에 의한 석탄 이용의 추진) • 석탄수송의 개선 Scraper 설치에 대한 보조금 • 석탄 소비의 증대와 환경보존과의 조화 	
정 전 연 가 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(FERC)에 의한 유정도 가격의 규제 • '78년 이후 新가스('77년 4월 이후에 생산된 가스)의 유정도가격 철폐 • LNG의 도입선의 다변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86년 4월 유정도가격 전면해제를 발표하였으나, 현단계에서는 실현되지 않고 있음. • 再販用 요금규제 - 코스트주의에 의한 규제요금 (운송요금), 배급요금규제 - 코스트에 의한 규제요금이 남아있으므로, 현재의 천연가스 시장을 가능한 한 시장동향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이해시키고자 하고 있음. 	
원 자 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자력의 확대 및 원자력이용 개발 • 고속增殖爐의 개발추진 • 원자력 발전설비와 핵연료 재처리 설비의 수출금지('78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규제와 수속 간소화 • 핵폐기물 처리의 추진 •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원자력발전의 이용추진 • 차세대爐의 연구개발 	
전 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78년 공익사업규제정책법 - Co- Generation 보급과 다양한 사업자의 에너지공급사업으로의 산업을 촉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송전선의 Co-Generation업자에 대한 개방을의 무화 • 기존 전기사업자의 Co-Generation사업에 대한 출자를 50% 이하로 제한 • 석탄, 원자력 중점 지향 • 규제완화조치의 방향으로(예 : 소규모 발전사업을 공익사업 규제대상에서 제외) 	
R & 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합성연료공사에 의해 대체에너지의 R&D를 추진 • 민간투자가 제약을 받는 분야에서 연방정부의 역할 강화 • 석탄의 가스화(합성천연가스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에너지의 개발에 있어서도 민간의 협력에 기대, 정부의 역할은 장기이면서 리스크가 높은 R & D에 국한 • Clean Coal, Technology Project의 추진(예 : 매연의 제거, 排煙脫硫, 脱硝, 가스화, 유동상 연소, 메탄올 제조) • 초전도 기술의 이용 	
기 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파이프라인 회사의 사업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규제를 받음. • 石油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으로서, 기초연구단계에서는 직접보조, 상업화 단계에서는 세제면에서 보조. • 美國,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체결('88년) 	

〈캐나다〉

		석유위기 후~'85년	'86년 이후 현재까지
정책 목 표	정 목 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82년 "국가에너지계획" 책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에너지공급의 안전보장과 완전자급 -에너지산업, 특히 石油, 가스산업의 캐나다化 -가격결정과 수입분배의 공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에너지지원의 탐사·개발 • 에너지 자급체제의 확립
	省 에 너 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新車燃費 규제(미국수준) • 모델 건축기준(단열기준) • 주요 가정용품, 사무용기기의 최저효율 기준 • 공장등의 省에너지 실적보고 등이 있지만, 캐나다는 자원보유국이기 때문에 개발정책의 방침을 우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省에너지투자촉진(보조금)등, 前期의 정책을 계속 유지
	석 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석유輸入稅 도입, 탐사공제율 저하에 따라 캐나다 정부의 에너지수익을 증가시킨다. • 石油가격규제(값싼 국산원유) • 경질원유 수출금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石油 수출입 제한의 폐지 • 石油가격 규제완화
	석 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석탄개발은 수요의 동향, 시장원리에 맡겨 추진 • 가능한한 액체연료를 석탄으로 대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석탄생산, 수출에 관한 하부구조정비 등
	천 연 가 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천연가스 가격규제(천연가스 이용을 촉진하는 저렴한 국산가스가격) • 수출 천연가스 가격규제(캐나다의 수입원유 코스트에 연동한 석유대체정책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스가격을 국제수준에 가깝게(통제 철폐) 시장 주도형 가격개선책으로 전환
	원 자 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캔두爐에 의한 원자력개발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본적인 원자력정책에는 변화가 없지만, 수요가 계획에 비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, 계획을 하향 수정
	전 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난방시장에 있어서 石油로부터 전력으로의 전환 추진 • 石油화력으로부터 석탄화력으로의 전환촉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前期의 정책을 계속 유지
	R & 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천연가스 이용기술의 개발 • 타르센드, 중질유의 사업화 촉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송부문의 경유 휘발유대체에너지(CNG 프로판 사용)의 연구개발 • 타르센드, 중질유개발 및 極地 지구의 유전개발 촉진

〈프랑스〉

		석유위기 후~'85년	'86년 이후 현재까지
정 목 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90년대 에너지자급률 50%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 자립계획의 책정('81) -省에너지의 추진 -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산 에너지생산의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9차 국가종합계획('84~'88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'90년의 에너지수입 의존도 51%, -석유의 의존도 35% 정도 -省에너지, 대체에너지 이용의 확대

		석유위기 후~'85년	'86년 이후 현재까지
정 책 목 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에너지공급원의 다변화 -에너지정책의 민주화와 지방분권화 • 에너지계획의 수정 -에너지 수요전망의 대폭적인 하향수정 -원자력 개발규모의 축소 -전력사용의 확대 및 전력수출 촉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원자력발전의 비율은 '90년까지 68~84%까지 제고 -'90년의 석탄소비는 '82년 대비 18~43% 감소, 국내탄 생산도 17% 감소할 전망 • 에너지정책은 안전보장, 경제정책(고용확보, 수출 확대 등), 외교정책과 일체화 • 국내에너지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, 특히 에너지의 안전보장을 중시하고 에너지공급면에서의 독립성(원자력, 국내 및 해외탄 개발, 수입 등), 유연성(전력비율의 향상)의 향상을 추진
정 책 목 표	省 에 너 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省에너지투자에 대한 투자보조금 대부 • 자동차의 최고속도 제한 • 기존 주택단열화 공사에 대한 세액공제 등 • 철력소비의 절약촉진(서머타임제의 도입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대세제(특별상각, 설비투자세액공제) • 용자제도(기업, 개인의 省에너지 투자를 대상) • 보조금 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AFME(에너지관리청) 보조금 -전략적 산업부문발전위원회 보조금 (Heat Pump, 난방조정용 대상) -주택개량공사 보조금 -EDF(프랑스 전력공사) 보조금
정 책 목 표	석 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A-10제도 : 원유수입, 정제에 관계된 허가제도, 신규참입제의 규제, 정제쿼터 • A-3제도 : 석유제품 수입·판매에 관계된 허가제도, 정부에 공급계획 제출과 인가, 3개월분의 판매량 비축의무를 규정 • 가격규제제도 : 정유공장가격, 판매가격의 상한규제 - 서서히 규제 해제되어 현재는 자유화 • 국영 및 국책회사에 의한 석유업계 선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급원의 다변화와 수입석유의존도의 감축 • 민족계 석유회사의 국내, 해외에서의 사업확대 보조 • 석유정제부문의 설비 축소·합리화 • 국내유전 탐사
정 책 목 표	석 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탄의 개발촉진(국내탄 개발의 보조금 배증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탄의 생산목표를 '88년 1,100~1,300만톤으로 설정 • 생산성의 향상(장래성있는 탄전에 대한 집중 및 인원, 적자탄전의 축소, 정리등) • '88년을 목표로 석탄공사의 적자 해소
정 책 목 표	천 연 가 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프랑스가스공사(국영기업)에 의한 독점체제 • 천연가스 구입가격, 가스요금의 규제 - 대형수요자에 대한 특별계약요금은 자유화('85년) • 공업용의 경우 石油대체를 가스주도로 추진한다. • 천연가스 공급원 다변화 - 구매자로서의 Bargaining Power 유지와 안정공급 확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하부구조의 관리, 강화(파이파라인 건설 등) • 소련으로부터 80억m³/년의 천연가스 수입('84년~2008년)
정 책 목 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74년 이후의 전원개발은 모두 원자력으로 한다는 방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속증식로에 대한 연구(차세대爐로서 취급된다)

		석유위기 후~'85년	'86년 이후 현재까지
정	원자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자력 기술, 연료사이클의 국산화 공급면에서 보면 신규발주는 불필요하지만 원자력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연간 1기 발주 ('83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88년~'91년의 4년간에 대해서는, 연간 1기 발주를 2년에 1기 발주로 변경 세계 최대의 고속증식로(FBR) 스파베틱스의 고장('87년)으로 인하여 FBR 프로젝트 보류. 향후에는 구주 공동프로젝트로서의 설계연구 계획중.
전	전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프랑스전력공사(국영기업)에 의한 거의 1사 독점체제 전력사용 확대를 위한 판촉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급탕 설비, 히트펌프 매입 -비수요기에 특별 할인요금 -상담 서비스 -電化설비 투자를 위한 보조금 지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프랑스전력공사의 자주적 재량 확대 수급조정형 요금으로서 피크일 부하여제요금 및 계절별 구분 변동 요금의 실시
책	R & 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78년 태양에너지청을 정부에서 발족. 그후 신설 에너지관리청에 합병되어 태양에너지 를 중심으로 바이오매스, 풍력, 해양온도차 등의 R&D 추진. 알콜 연료의 개발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목재 이용의 바이오매스 대체연료개발(메탄올 10% 이상의 "M10" 계획 등) 지열(주택난방용 저온 지열개발, 수출용 고온 지열 기술개발) 태양열 발전은 '86년 운전정지
기	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對OPEC, 對공산국에 대하여 독자외교 전개 IEA에 가입하지 않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PWR에서 FBR로의 중간단계로서 MOX 연료 (혼합산화물)를 이용

〈西獨〉

		석유위기 후~'85년	'86년 이후 현재까지
정	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73년 에너지 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1차에너지 공급의 주역은 石油 -'80년대의 에너지원으로서는 원자력, 천연가스에 기대 -석탄은 원자력발전의 개발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막간 지원으로서 出炭 수준의 유지를 도모 한다. '74년 에너지계획 1차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석유소비억제, 대체추진 -석탄 증시 정책 '77년 에너지계획 2차 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省에너지의 추진 -석유의존도 절감 -국내탄의 우선 이용 -원자력의 이용 확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86년 에너지계획(콜 정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 -국내탄 이용 촉진정책의 지속 -미래의 에너지개발 촉진 -합리적인 에너지 이용 -환경보호 -石油의존도 감축과 석유공급원의 다변화

		석유위기 후~'85년	'86년 이후 현재까지
정 목 책 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에너지공급선의 다양화 -일관된 에너지연구의 지속 •'81년 에너지계획의 3차 개정 -省에너지 -脫석유 -환경배려 	
정 석 유	省 에 너 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'76년 전물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률 제정 -신축건물에 대한 단열기준 및 난방공기조절, 온수기기의 설계 및 조작기준의 규제 -기존 건조물의 단열공사에 대하여 7.5%의 투자 세액 공제 •열회수투자, Co-Generation 투자에 대하여 투자 세액 공제 省에너지, 가정기기, 省에너지 차의 개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Heat Pump, 솔라시스템등 신형 난방장치의 투자에 대한 상각 증가 •신축 빌딩의 단열기준 강화 •Co-Generation 및 폐열에 의한 지역난방의 추진 •省에너지에 대한 투자감세의 일부를 '90년까지 폐지
석 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石油소비억제, 대체촉진 •긴급 비축석유의 증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국영개발회사에 의한 개발촉진 •Clean Car의 도입장려(환경에 대한 대응) : 재정적 촉진책 부여(우대세제) •비축 수준의 증대
천 연 가 스	석 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국내탄 우선이용(국내석탄산업의 보호, 고용확보, 에너지안전보장확보) •전력업계, 제철업계와 석탄업계 사이에 장기거래 계약(世紀계약) •석탄전환계획의 채택, 석탄수입완화 조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채산상 가장 유리한 탄광에 보조 집중 •석탄광업의 합리화 추진
원 자 력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에너지공급원의 다변화의 요청에 따라 소련으로부터 천연가스 수입 •신파이프라인에 의해 노르웨이로부터 수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공급원의 다변화 •공급생산의 확보 •공급중단이 불가능한 계약체결 •저장능력의 개선
R & D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란 관점에서 원자력 개발 중시 방침 •원자력발전 확충에 따른 전력 코스트의 인하 •원자력 원료 사이클의 재처리, 폐기물처리 등의 대책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평화적 이용 추진 •재처리공장의 건설촉진, 풀루토늄 연료가공 공장의 조업 인허가 계속 •원자력 시설의 규제에 관해서는 쟄정부에 권한 위임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석탄액화, 가스화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재정원조 •연방연구기술자, 연방경제성, 주정부가 민간의 에너지연구개발을 보조 •원자력(핵연료사이클, 고속증식로, 고온원형로, 핵융합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민간부문 R&D의 확대 •원자력, 석탄액화·가스화, 채탄, 재생가능에너지, 省에너지에 중점.
		•해외탐사 프로젝트비용의 50% 보조	•'86년 대기오염방지 규칙개정: 보다 엄격한 규제화.

		석유위기 후~'85년	'86년 이후 현재까지
정책	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별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탐사비용의 2 / 3까지 보조 ('71년부터) • '73년에 국내 탐사에까지 범위 확장 • '84년 이후 보조율은 상한 50%로 한정 	

〈英國〉

		석유위기 후~'85년	'86년 이후 현재까지
정책	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장원리, 경쟁원리에 의거하여 에너지기업의 체질강화를 도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장메커니즘의 활용에 의한 에너지가격의 경제적 설정 - 국유사업의 경영효율화 및 민간부문의 역할확대 (국영 - 민영화를 포함) - 에너지시장의 수요측면에서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• 에너지 자금률 유지 • 국내 에너지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• 원자력 개발의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제적 에너지가격의 설정 • 대륙붕의 석유, 가스탐사, 개발의 촉진 • 원자력 개발 계획의 추진 • 석탄산업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한 장기계획의 추진 •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• 재생가능 에너지의 개발
정책	석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"SAVE 1T" 캠페인 ('75년) : 홍보활동지원 • 신축건물에 대한 단열기준 강화 • 구건축물에 대한 단열공사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제 공제 • 공업에너지 절약계획, 에너지감사계획 : 기업방문을 포함한 상담진단사업, 응자, 기업진단콘설턴트에 대한 謝禮의 일부 보조 • 신차의 연비 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86년을 省에너지年으로 지정, 재반시책 시행 • 에너지효율화 실증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원
정책	석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北海유전의 개발 계획, 경제성이 전망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보조 • 석유산업에 대한 민간자본도입 추진계획 • '79년까지는 소매가격규제가 있었음. • BNOC(영국 국영석유회사)의 폐지 • '83년의 세제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82년 4월 이후 개발 인가된 유전(北海남부와 육상은 제외)의 로열티 면제 - 신규유전의 石油수입세에 대한 석유 공제량 인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면허 광구의 로열티 폐지 • 石油수입에 대한 공제료 인하

		석유위기 후~'85년	'86년 이후 현재까지
정책 목표	석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석탄연소계획 : 석탄전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최고 25%까지 보조 석탄산업의 코스트 경쟁력 강화
	천연가스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스공사의 민영화
	원자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원 구성은 석탄 주체, 원자력 보완, 기타 등으로 조정 지원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프랑스로부터 전력 구입(석탄화력의 억제) 석탄화력 발전소의 열효율 개선 장기 전원개발 계획에서는 원자력 50%, 석탄 42%, 재생가능에너지에서 8%로 하고 있다(2020년)
	R & 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석탄가스화, 액화, 풍력, 지열에 중점을 둠(특히 풍력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석탄이용기술(특히 加壓流動床 연소)의 R&D에 중점 해외 石油, 천연가스 개발 기술 省에너지 기술개발

〈이탈리아〉

		석유위기 후~'85년	'86년 이후 현재까지
정책 목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81년 "신국가에너지계획"을 책정, '80~'90년의 10년간 에너지수요가 연율 2.3%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하에 에너지공급의 안정화 보를 위하여, -石油의존도를 '80년 67%에서 '90년에는 51%로 감축 -주요에너지원의 다양화 -省에너지 -국내 에너지원 개발 등을 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85년 "신국가에너지계획"을 개정하여 '85~'90년의 5년간 에너지 수요전망을 하향 수정(연율 1.4%)하고, -석유의존도를 '90년에는 54%로 절감('81년 계획을 완화). -에너지 목표의 총괄적인 방향성은 '81년과 동일하지만 -원자력정책은 대폭적인 정책전환을 강요받고 있다.
	省 에 너 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제발전유지를 위하여 강력한 성에너지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다. -가격기능의 활용 : 휘발유(중과세), 경유(우대) -경유차의 보급촉진 -건물의 난방규제 : 실내온도, 난방설치기준 단열 기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종전의 정책에 더하여 -공업부문에서는 省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용자 -민생부문에서도 省에너지투자(2조리라)가 이루어지고 있다.
	석 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石油의존도 감축('80년 76% → '90년 51%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石油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, 석유의존도의 감축목표를 약간 완화('90년 54%) -石油정책설비 감축(3,000만톤) -유통구조 합리화(주유소의 면허부여, 이전의 인가기준 강화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석유대체에너지의 중심으로서 '80년~'90년의 10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85년 계획의 하향수정(44% 감소), 환경영향의

		석유위기 후~'85년	'86년 이후 현재까지
정책 체	석탄	연간 연률 10%로 증가, 석탄화력 발전소의 신설 (1,720㎿) 등	문제 때문에 화력발전소, 신설계획의 지연, 수정
	천연가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적극적인 천연가스 소비확대(1차에너지 수요의 세어 '80년 16.3% → '90년 18.9%) -가스이용에 관한 우대세제 -국내 천연가스의 이용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천연가스 소비는 일정수준에 달할 것으로 인식. 발전용가스소비는 공해대책용 피크 대응용등의 조건만 인정하는 소비제한 방침
	원자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石油 대체에너지의 중심으로서 '90년까지 '80년의 16배의 원자력발전 신설(100㎿, 4基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85년계획의 하향수정(50% 감소) '87년 국민투표의 결과, 원자력정책의 방향전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신규입지, 건설계획의 중지 -국의의 원자력 프로젝트 참가중지
	전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脱석유를 위하여 원자력, 석탄, 천연가스를 에너지원으로서 중시한다. • '85년~'90년에 약 1.5배의 수요신장을 전망하고 있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前回 전망과 동일한 전력수요증가를 전망 • 원자력등의 감소분을 전력수입으로 보완
	R & 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石油의존도 감축을 목적으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석탄액화, 가스화 -지열발전 -태양열 이용발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석탄연소기술(유동상연소, CWM, 탈황) -Co-Generation 등

〈소련〉

		석유위기 후~'85년	'86년 이후 현재까지
정책 목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76년 제10차 5개년계획 ('76~'80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효율과 질의 향상에 기초한 물적 생산의 발전 (양 보다 질) -에너지의 증산과 효율적 이용절약 (증산은 특히 천연가스에 기대) -원자력의 급속한 발전 -석탄의 재평가 • '81년 제11차 5개년 계획('81~'8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절약 -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적극 투자 -천연가스 대량증산, 석유의 溫存, 석탄의 소량 증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86년 제12차 5개년계획 ('86~'9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省에너지와 고도기술개발로 “질과 효율”的 향상 도모 -에너지개발과 省에너지의 관련부문에 투자집중 -천연가스의 증산과 석유, 석탄의 현생산 유지 -원자력발전의 확대 • 장기에너지계획(2000년까지의 방향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천연가스생산의 증대, 그 후 안정화 -천연가스 피크 후의 증가에너지는, 원자력, 노천굴 석탄, 신에너지로 한다.
	정책 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경제전체에서의 절약목표량의 설정 • 에너지가격의 인상 • 省에너지 기기·기술의 도입 • 에너지의 소비구조 개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경제전체에서의 절약목표량의 설정 • 원자력이용 확대에 의한 유기에너지의 절약 • 철강, 시멘트/석유화학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省에너지 촉진
	省 에 너 지	• 생산성 향상	• 석유체굴부문의 활성화(적극 투자)

		석유위기 후~'85년	'86년 이후 현재까지
정책	석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기술적 재장비 -공정의 자동화 -새로운 기계 설비의 도입 •石油 탐사의 강화 •석유보존책(목표생산량의 설정) •石油의 이용효율향상, 로스의 삭감 •석유제품의 품질개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석유공업의 과학기술 진보 촉진 •신규 유전의 개발과 기존유전에서의 회수율의 제고 •자동차용 연료의 대체(LNG, CNG의 이용확대)
	석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생산성향상, 품질개선(노천굴 채탄의 증대, 기술적 재장비) •석탄공업부문의 관리조직 개선 •수송면의 효율화(석탄의 파이프라인수송, 철도, 도로당의 충실화) •기계화 채탄, 수력채탄의 도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석탄채굴의 활성화(적극투자) •노천굴 채탄의 우선적 개발에 의한 증산
	천연가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파이프라인망의 확충 •연료 대소비지를 중심으로, 지하 가스저장시설의 증설 •서부시베리아 중심의 천연가스 증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파이프라인의 건설촉진(수출용 포함) •가스, 콘덴세이트의 이용 확대
	원자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유럽, 러시아부를 우선적으로 원자력의 개발 촉진 •고속증성자로의 전설과 조기기동 개시 •전력증산의 태반을 원자력 수력에 위임 •1기당 출력의 대영화와 고속증식로의 習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유럽, 러시아부를 우선적으로 원자력 발전 증강의 지속 •발전에서 차지하는 원자력 의존을 가일층 강화(2000년에는 '85년의 5~7배) •열병합 원자력발전소 및 열공급 전용 원자로의 도입
	전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유럽, 아시아부와, 시베리아, 중앙아시아의 전력계통의 통합 •초고압 송전幹線의 건설작업 •화력 편중에서 원자력 및 수력증시 •건설 코스트의 삭감을 위한 대형 발전소의 건설 촉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열병합 발전의 추진 •화력발전에 있어서는 석유의 대폭 삭감과 석탄, 천연가스의 이용확대 •수력개발의 촉진(시베리아, 중앙아시아에서는 대량 수력의 개발, 유럽부에서는 피크용 전원) •소련 전체의 단일 전력계통의 확대(88~94%)
	R&D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비재래형 재생가능에너지의 R&D

〈中國〉

		석유위기 후~'85년	'86년 이후 현재까지
정책목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'76년 제5차 5개년계획('76~'80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에너지자원 산업의 증강 •'81년 제6차 5개년 계획('81~'8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에너지의 절감 -에너지자원 산업에 대한 적극투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'86년 제7차 5개년계획('86~'9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에너지산업의 건설템포를 촉진 -전력의 공급확대 -省에너지('85. 12. 9 TOE / 1만원 → '90년 11. 4 TOE / 1만원

		석유위기 후~'85년	'86년 이후 현재까지
정	목 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82년 국민경제발전계획 ('80~200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에너지자원의 개발촉진, 에너지산업의 기초화립 -에너지 절감 	
정	省 에 너 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省에너지 목표량의 설정 (국민경제 수준) • 省에너지를 위한 기술개조에 적극 투자 • 省에너지 기기의 보급(예: 카마드) • 에너지부족지역의 경우, 철합금 등 에너지 다소 비형 제품의 생산여제 • 공급구조의 조정, 중공업의 비중절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제구조(산업구조와 제품구조의 포함)의 조정 • 경영관리수준의 향상과 관리상황의 개선 • 余熱, 余氣, 폐수의 이용 촉진 • 省에너지관계의 기술개조 전개 • 省에너지 목표량의 설정(국민경제수준)
	석 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石油연소의 절감, 특히 발전용 (석탄으로 전환) • 신규유전의 개발 • 대외협력에 의한 기술력 향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유생산량 逮增請負制를 계속 실시 • 낡은 유전의 설비정비, 개조·확장의 추진 • 외국의 관리경험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• 경질유의 비율 향상 촉진 • 비축량 확대 • 석유의존도 감축
	석 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점탄광의 일반적 기계화에 의한 증산체제의 확립 • 대형 석탄기지의 건설 • 소형탄광의 확충 • 탄광의 기업정돈에 의한 생산성 향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통일분배 탄광에 대해서는, 투입·산출 총청부제를 실시 • 건설의 중점을 기존 탄광의 기술개량화 개조, 확장에 둠 • 지방과 부문이 자금을 모아 탄광을 건설하도록 장려 • 우수한 탄광에 대해서는 건설 보조
	천 연 가 스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천연가스의 탐사, 개발 강화
	원 자 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0만 kw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획에 맞춰 중점적으로 건설 • 열병합발전을 서서히 추진하여 열효율을 높인다. • 조기건설계획의 책정 • 원자력기술의 질적 향상
	전 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력부족 지역의 경우 중형발전소 건설 • 수력 대형발전소의 건설(농촌지구에는 소형 수력 발전) • 송전, 변전시설의 정기 강화 • 전력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산업용 수요에 대해서는 야간 이용장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, 부문, 기업이 자금을 모아 전력사업을 하도록 장려한다. • 전기요금을 지렛대로 전력수급조정의 역할을 발휘시킨다.
R & D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省에너지를 주요목표로 하는 기술혁신에 투자집 중 • 태양에너지, 풍력 및 지열의 이용 촉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바이오매스, 지열, 풍력, 해양에너지, 메탄가스, 태양에너지의 R&D • 석유정제 2차 설비의 개발, 응용

		석유위기 후~'85년	'86년 이후 현재까지		
정책	기타	• 농촌에 있어서는 여러종류의 에너지로 보완, 종합적으로 이용하며, 실효를 중시하는 방침에 굳건히 하여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절약에 노력.			

주요국의 2000년도 에너지계획(전망)

	에너지원	1986(실적)		2000(계획·전망)	
		백만 TOE	구성비(%)	백만 TOE	구성비(%)
美 國	石炭	435	24.1	633	26.9
	石油	751	41.6	848	36.1
	天然气	421	23.3	473	20.1
	原子力	113	6.3	168	7.1
	水力·기타	86	4.8	228	9.7
	계	1,806	100.0	2,350	100.0
캐나다	石炭	33	14.2	47	15.1
	石油	70	30.2	85	27.2
	天然气	41	17.7	64	20.5
	原子力	16	6.9	26	8.3
	水力·기타	72	31.0	90	28.8
	계	232	100.0	312	100.0
프랑스	石炭	18	9.1	16	6.7
	石油	86	43.7	80	33.6
	天然气	25	12.7	32	13.4
	原子力	53	26.9	93	39.1
	水力·기타	15	7.6	17	7.1
	계	197	100.0	238	100.0
西獨	石炭	73	27.4	89	31.7
	石油	115	43.2	105	37.4
	天然气	44	16.5	45	16.0
	原子力	29	10.9	38	13.5
	水力·기타	5	1.9	4	1.4
	계	266	100.0	281	100.0
英國	石炭	67	32.7	76	33.0
	石油	75	36.6	84	36.5
	天然气	50	24.4	51	22.2
	原子力	12	5.9	16	7.0
	水力·기타	1	0.5	3	1.3
	계	205	100.0	230	100.0
이탈리아	石炭	15	10.4	38	21.9
	石油	87	60.4	72	41.4
	天然气	29	20.1	36	21.1

	에 너 지 源	1986(실적)		2000(계획·전망)	
		백만 TOE	구성비(%)	백만 TOE	구성비(%)
이탈리아	原 子 力	2	1.4	10	5.7
	水 力·기 타	11	7.6	17	9.9
	計	144	100.0	173	100.0
스웨덴	石 炭	3	5.6	12	20.7
	石 油	19	35.2	15	27.3
	天 然 가 스	0	0.0	2	2.8
	原 子 力	17	31.5	13	23.0
	水 力·기 타	15	27.8	15	26.1
	計	54	100.0	56	100.0
소련	石 炭	376	26.8	444	22.4
	石 油	447	31.9	470	23.7
	天 然 가 스	491	35.0	900	45.5
	原 子 力	35	2.5	80	4.0
	水 力·기 타	53	3.8	86	4.3
	計	1,402	100.0	1,980	100.0
中國	石 炭	531	79.3	707	70.5
	石 油	99	14.8	200	19.9
	天 然 가 스	12	1.8	33	3.3
	原 子 力	0	0.0	3	0.3
	水 力·기 타	28	4.2	60	6.0
	計	670	100.0	1,003	100.0

